

=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심사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6. 5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7. 6. 8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('07.6.15) 상정 의결

**2. 제안설명의 요지(최삼립 총무과장)**

**가. 제안이유**

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」의 개정으로 우리구의 심벌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**나. 주요골자**

[별표1]의 포상용 용지규격과 [별표2]의 기념휘장규격의 구 심벌마크 모양 변경 .

**3. 관계법령**

지방자치법 제9조

**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- 본 조례 개정안은 2007. 5. 15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」의 개정으로 우리구 심벌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표창장, 감사장, 기념휘장 등에 사용할 구 심벌마크를 바꾸려는 것으로
- 이는 우리구 구기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후속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 론 요 지 : 없음**

**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